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79호) 공포 알림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79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4. 8. 13.)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약사법」에 따른 피해구제급여 신청기한을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서식에 명시

2. 아울러, 동 개정령은 '24.8.13.자 관보, 우리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79호).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실, 원, 보건복지위원회, 분부(57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3개 전부서), 6개 지방청장(54개 전부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관련 단체



주무관

이여름

사무관

김지애

의약품안전평 전결 2024. 8. 13.

가과장

최희정

협조자

시행

의약품안전평가과-5616

(2024. 8. 13.)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  
처 의약품안전평가과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719

팩스번호 043-719-2700

/ summer0808@korea.kr

/ 대한민국 공개